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 개정발표일 : 2026년 04월 27일
- 시행일 : 2026년 11월 01일
- 발표기관 : 해관총서
- 출처 : 해관총서 (방문일 : 2026년 6월 18일)

※ 원문 출처 “해관총서,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해관총서령 제283호)”
공고 내 첨부파일 3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4/28/article_2026042811190688024.html)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법규,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출입국(국경 통과 포함)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곡물이란 가공용으로 사용되며, 비번식 용도의 화곡류, 두류, 유지작물 등 작물의 종실 및 서류의 껍근 및 껍경 등을 말한다.

제3조 해관총서는 중국 전역의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주관 해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 출입국 곡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출입국 곡물의 품질 안전에 대한 위험관리를 실시하며,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및 시장진입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 유해생물 위험분석, 감독관리 시스템 평가 및 심사, 검사검역 요구 확정 및 해외생산기업 등록등기 등도 포함한다.

제5조 출입국 곡물의 송하인, 수하인 및 생산, 가공, 보관, 운송 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곡물 품질안전 통제 체계와 전염병 방제 체계를 구축·실시하여 출입국 곡물의 품질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성실과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장 입국 검사검역

제1절 등록등기

제6조 해관총서는 입국 곡물의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이하 ‘해외 생산가공기업’)에 대해 등록등기 제도를 실시한다.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지역의 법률·법규 및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강제적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등기 관리를 실시하는 입국 곡물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혹은 지역 내 주관기관의 심사 합격 후 해관총서에 추천한다. 해관총서는 추천 자료를 접수한 후 심사·확인을 진행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의 해외 생산가공기업에 대해 등록등기를 허가한다.

해외 생산가공기업의 등록등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연장이 필요한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또는 지역 내 주관부문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관총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해관총서 확인 후 등록등기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한다. 필요 시 해관총서는 해당 수출국 또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감독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하는 해외 생산가공기업에 대해 샘플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등록 허가된 해외 생산가공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곡물이 검사검역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기업의 등록등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중국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기업은 수출국 혹은 지역 내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선별·이물 제거, 건조, 검사, 방역 등 품질안전 통제시설 및 품질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물질 첨가는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체계적 시찰 전염병 현황 조사, 생산·가공·보관기업 점검 및 선적 전 검사·감독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검사검역

제8조 해관총서는 입국 곡물에 대해 검역 통과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국 혹은 지역에서 특정 곡물을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려는 경우 해당 수출국 혹은 지역의 공식 주관기관이 해관총서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곡물의 재배 및 저장 운송 과정 중 발생한 유해생물 종류, 위해 정도 및 방제현황, 품질안전 통제 시스템 등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입 기업이 신청하고 기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입국 곡물 위험분석, 현지실사 및 대외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중국 법률·법규 및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 등에 따라 입국 곡물의 구체적인 검사검역 요구를 제정하고, 입국 허가하는 곡물 종류 및 원산 국가 혹은 지역의 목록을 공표한다.

입국이 이미 허가된 곡물 종류 및 관련 원산 국가 혹은 지역에 대

하여 해관총서는 해외 전염병 동향, 국내 유입 전염병 적발 및 기타 품질안전 상황에 근거하여 입국 곡물을 대상으로 구체적 검사검역에서 요구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실사, 사전 검사, 선적 참관 및 대외 협상을 실시한다.

제9조 입국 곡물은 해관총서가 지정한 국경출입구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지정 국경출입구의 조건 및 관리 규범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10조 해관총서는 입국 곡물 대상으로 검역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입국 곡물의 화주는 무역계약 체결 전에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비준 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검역심사 비준 절차를 신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가의 곡물 품질안전 요구, 식물 검역요구 및 <검역허가증>에서 규정한 관련 요구조항을 무역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국경출입구 조건의 제한 등으로 인해 입국 곡물 곡물을 방역 및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지정 보관·가공 장소(이하 ‘지정기업’)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검역허가증> 신청 시 지정 장소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곡물은 입국할 수 없다.

제11조 해관은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입국 곡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 (1) 중국 정부 및 곡물 수출국 혹은 지역 정부 간 체결한 양자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및 기타 양자협정에서 정한 관련 요구
- (2) 중국 법률·법규,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적 요구 및 해관총서가 정한 검사검역 요구
- (3) <검역허가증>에 명시된 검역 요구

제12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곡물 입국 전 입국 국경출입구 해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곡물 수출국 혹은 지역 내 주관부문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 (2) 원산지 증명서
- (3) 무역계약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장 등 무역 증빙서류
- (4) 양자협정, 의정서, 양해각서에서 확정된 증빙서류 및 해관총서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빙서류

유전자변형 곡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도 취득해야 한다. 해관은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 전자데이터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 대조·검증한다.

화주가 해외 곡물 수출업체에게 수출국 또는 지역의 주관기관이나 제3자 검사기관이 발급한 품질증명서, 위생증명서, 선적적합증명서, 중량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요구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 입국 곡물은 운항 중 선상 훈증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검사 전 입국 곡물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은 입국 국경출입구 해관에 입국 곡물 선상 훈증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통풍 및 환기를 시켜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시 해관은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 검사 결과, 훈증제 잔여물 발견되거나 훈증 잔류 기체 농도가 안전표준 제한량을 초과할 경우 검사검역 및 관련 현장 검사 작업을 잠정 중단한다. 훈증제 잔여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잔류 기체농도가 안전표준 제한량 이하가 된 후에야 현장 검사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제14조 선박으로 벌크 곡물을 적재하여 입국할 경우, 해관은 정박지에서 화물 표면에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중대한 품질안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항할 수 있다. 벌크 곡물은 항구에서 지속적으로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

직접 접안 후 검사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박 컨테이너, 철도, 자동차 등 기타 방식으로 곡물이 입국되는 경우 해관이 지정한 검사장소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해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15조 해관은 입국 곡물에 대해 현장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 검사검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화물 증서 검사 : 증서와 화물의 명칭, 수(중)량, 수출 저장·가공 기업명 및 그 등록번호 등 정보를 대조 확인한다. 벌크 화물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이전 회차 운항 시 선적 화물 및 창고 정리 현황을 검사해야 하며, 적재 곡물의 품질안전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표지 등 정보를 검사해야 한다.
- (2) 현장 검사 : 곡물 내 수분 유입 여부, 곰팡이 발생 여부, 부패·변질 여부, 해충 및 잡초종자 등 유해생물 존재 여부, 잡곡, 식물병 잔류 성분, 토양, 훈증제 잔여물, 종자코팅제 오염, 동물 사체, 동물 배설물 및 기타 입국 금지물 혼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 (3) 시료 채취 :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측정을 실시한다.
- (4) 기타 현장 검사 활동

제16조 해관은 관련 업무 절차 및 표준에 따라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 및 발견된 의심물질에 대해서 실험실 검측 및 감정을 진행하고, 검사검역 결과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험실 검측 시료는 최소 3개월 간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검측 결과 이상이 있어 대외적으로 증명을 제시해야 할 경우 시료는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입국 곡물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관의 입회 감독 하에 국경출입구 정박지, 항구 혹은 지정된 검역감독관리 장소에서 훈증, 소독 혹은 기타 무해화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 (1) 검역성 유해 생물 혹은 기타 검역 위험이 있는 유해곤충 생체가 발견되고 확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 (2) 종자코팅제·훈증제 오염, 유독성 잡초종자 기준치 초과 등 안전 위생의 문제가 발견되고 효과적인 기술 처리 방안이 있는 경우
- (3)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 안전 상의 위해를 초래할 경우

제18조 입국 곡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반송 혹은 폐기 처리한다.

- (1) 해관총서 입국 허가 명단에 없거나 곡물 수출국 혹은 지역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등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2) 유독·유해물질 및 기타 안전위생 항목의 검사결과가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용도 변경 또는 유효한 처리 방법이 없을 경우
- (3)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가 없거나 증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4) 토양, 검역성 유해생물 및 기타 입국 금지물이 발견되었으나 유효한 검역처리방법이 없는 경우
- (5) 침수,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 변질되었거나 화학성·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되어 용도 변경 또는 유효한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 (6) 기타 원인으로 곡물 품질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경우

제19조 입국 곡물에 대한 검사검역 진행 후 해관은 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 등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 시 해관은 <검사검역처리통지서> 및 관련 검사검역증서를 발급한다.

제20조 해관은 입국 곡물에 대한 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입국 곡물은 방역, 처리 등 조건을 갖춘 지정 장소에서 가공, 사용되어야 한다. 유효한 무해화 처리 혹은 가공 처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입국 곡물은 직접 시장에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입국 곡물의 하역, 운송, 가공 및 잔여물 처리 등 단계에서 유출 방지, 밀폐 등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국 곡물 가공 과정에서는 잡초종자, 병원균 등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곡물 가공 후 잔여물에 대해서는 열처리, 분쇄 혹은 소각 등 효과적인 무해화처리를 해야 한다.

해관은 입국 곡물 내 잡초 등 유해생물 검출 정도, 불순물 함량 및 기타 품질안전 상황과 지정 가공, 운송 기업의 방역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곡물의 가공 감독관리 위험등급을 확정하고, 관련 기업이 방역 통제, 모니터링 등 안전 방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제21조 입국 곡물이 비축용,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 인도용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생산, 가공, 보관은 해관총서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2조 과학 연구, 전시회, 샘플 등 특수한 사유로 해관총서 수입허가 목록 내에 미기재된 곡물이 소량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특별입국 허용 검역심사를 받아 <검역허가증>를 취득해야 한다.

제23조 입국 곡물의 하역, 저장, 가공 과정에서 상이한 여러 해관들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각 관련 해관은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검역 현황 및 감독관리 정보를 적시에 상호 통보 및 공유해야 한다.

여러 목적지에 분산 하역되는 입국 곡물에 대해서 해관은 통과 허용 전에 검사검역 현황을 제때에 상호 통보해야 한다. 상대측에 증서 발급이 필요할 시 관련 해관은 충분한 협상과 합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입국 국경출입구에서 진출되는 곡물에 대해서는 진출 전에 해당 국경출입구 해관이 목적지 해관에 입국 곡물 진출연락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4조 해외 곡물이 중국 국경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이 사전에 해관총서 또는 주관 해관에 신청하여 경유 노선, 운송 방식 및 관리조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관총서가 경유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해당 방안에 따라 경유가 가능하며, 이때 주관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경유 곡물은 반드시 밀폐 형태로 운송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주관 해관의 승인 없이 포장을 개봉하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역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출국 검사검역

제1절 등록등기

제25조 수입국 혹은 지역이 중국의 곡물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이하 '수출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직속 해관은 기업의 등록업무를 조직·실시하고 해관총서에 신고한다.

제26조 출국 곡물 생산가공기업은 다음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 (1) 법인 자격을 보유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여 <영업집조 (营业执照/영업허가증)>을 취득할 것
- (2) 기업의 곡물업무 전 과정 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각종 장부를 완전하게 유지하며 입출고 물류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것. 장부 보존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3) 선별, 건조, 검사, 방역 등의 품질안전 통제시설과 효과적인 품질 안전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 (4) 유해생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수요에 만족하는 인력을 배치하며, 해충, 쥐, 새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및 능력을 보유할 것
- (5) 곡물 위생상 문제가 있거나 유해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창고구역 내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생산·보관·취급해서는 안 된다. 창고와 부지는 포장 및 평탄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곡물은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고 바닥·벽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시를 명확히 할 것

제2절 검사검역

제27조 곡물 선적 후 출국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운송수단의 운송인, 컨테이너 사업장 혹은 그 대리인은 선적 전 해관에 청결, 위생, 밀봉 고정 등 적재적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되면 곡물을 적재할 수 없다.

제28조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곡물 출국 전에 보관 혹은 가공 기업 소재지 해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무역계약서, 송장, 자체검사 합격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본거래 방식인 경우 거래 전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해관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출국 곡물에 대해 현장 검사 검역 및 실험실 항목 검측을 실시한다.

- (1) 양자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및 기타 양자협정
- (2) 수입 국가 혹은 지역의 검사검역 요구
- (3) 중국 법률·법규, 강제성 표준 및 해관총서가 규정한 검사검역 요구
- (4) 무역 계약 혹은 신용장에 명시한 검역 요구

제30조 수입국 또는 지역이 검사검역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검역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거나 효과적인 제해처리 또는 기술처리를 거쳐 재검사검역 결과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해관은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국 또는 지역이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은 후 증서를 변경할 수 있다.

검사검역에서 불합격하고 효과적인 무해화 혹은 기술 처리 방법이 없거나, 처리 후 재검역에서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관이 <출국화물 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하며, 해당 곡물은 수출할 수 없다.

제31조 출국 곡물의 검사 유효기간은 최장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검역 유효기간은 원칙상 21일이며,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라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지역의 경우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에는 현지 사정을 참작하여 3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사검역 유효기간이 경과한 곡물은 출국 전에 다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2조 산지 및 국경출입구 해관은 상호 소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검역 현황 등 정보를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출국 곡물은 산지 검사검역을 거쳐 합격한 후 출국 국경출입구 해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하며, 화물과 서류의 일치 여부, 유해생물 등의 감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할 시 통행을 불허한다.

출국 곡물이 국경출입구에 도착한 후 합적될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신청하고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출국 곡물이 국경출입구에 도착한 후 수입국 혹은 지역이 변경되어 서로 다른 검사검역 요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위험 및 감독 관리

제1절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33조 해관총서는 출입국 곡물에 대해 전염병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기술 지침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해관은 곡물 입국 항구, 저장창고, 가공장 주변지역 및 운송 노선 중 곡물 환적 등으로 인한 내용물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구간 등에 대해 잡초 등 검역성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관련 기업이 긴급 대응조치를 취하고 즉시 조직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이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전염병 상황 모니터링 및 유해물질 제거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국 혹은 지역의 검역 요구에 따라 해관은 곡물 재배지, 수출 저장창고 및 가공기업 주변 지역에서 전염병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34조 해관총서는 출입국 곡물에 대한 안전위험 관리·통제, 감독 표본 검사 및 위험 모니터링 업무를 조직·실시한다.

제35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곡물 품질안전 정보 수집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보 출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 (2) 출입국 곡물 무역, 저장, 가공 기업의 품질관리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 (3) 해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모니터링, 안전위험 관리·통제, 감독 표본검사 및 위험 모니터링 과정 중 발견된 곡물 품질안전 정보
- (4)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국내외 업계협회 및 소비자가 제공한 곡물 품질안전 정보
- (5) 기타 곡물 품질안전 위험에 관한 정보

제36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곡물 품질안전 정보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곡물의 위험등급을 확정하여 동적인 위험등급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관리방안, 감독관리 조치 및 기업 감독조치 등을 조정한다.

제37조 출입국 곡물에서 중대한 전염병 및 중대한 품질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대응계획가동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경보 통보를 발표한다. 곡물에 안전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면 해관총서와 주관 해관은 즉각 경보 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38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상황을 감안하여 중요한 곡물 안전위험 정보를 지방정부, 농업·곡물행정 관리부문, 국외 주관기관, 출입국 곡물 기업 등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곡물 안전정보의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2절 감독 관리

제39조 입국 곡물의 보관, 가공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주관 해관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관 해관은 해관총서가 제정한 관련 요구에 따라 신청기업의 신

청 자료, 공정 과정 등에 대해 검역 심사를 실시하여 보관, 가공 곡물의 종류와 능력을 확정한다.

입국 곡물의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은 유효한 품질안전 및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방역, 처리 등 품질안전 통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0조 해관은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검역 감독을 실시한다.

지정기업, 수하인 및 대리인이 중대한 전염병 혹은 공공위생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1조 출입국 곡물을 취급하는 송하인, 수하인 및 그 생산, 가공, 보관, 운송 기업은 곡물 출입국, 인수·하역, 운송, 보관, 가공, 잔여물 처리, 배송 등 생산 경영 전반에 해당하는 과일을 만들어 문서화하며, 품질 추적 및 안전 방제 등 상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제42조 입국 곡물에 중대한 안전, 품질 문제가 존재하여 인체 건강 혹은 농림·축산·수산업 생산 및 생태안전에 중대한 손해를 이미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 곡물의 수하인은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조치를 통해 손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회수 및 처리 현황을 소재지 해관에 보고한다.

수하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 직속 해관은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발부하고 해관총서에 보고한다. 필요 시 해관총서가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해관총서 및 주관 해관은 품질 관리, 시설 조건, 안전 위험 통제,

성실경영 상황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기업 등급에 따라 곡물 입국 검역심사, 출입국 검사검역 및 일상 감독관리 등 분야에서 상응하는 검사검역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분류 관리 규범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4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검사를 신청한 곡물과 실제 곡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45조 입국 곡물에 대해 법에 따라 검역 심사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검역 심사비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에 속해 있으나 검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무단 판매, 사용하는 경우 해관은 <수출입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출입국 곡물의 송하인, 수하인 및 생산, 가공, 보관, 운송 담당 기업이 본 방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관련 문서를 작성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고 경고 처분을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3,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해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국·경유 곡물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거나, 임의로 곡물을 지정 검사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 (2) 경유 곡물의 포장을 임의로 개봉하거나 동식물 검역 봉인 표지 혹은 표식을 임의로 개봉 혹은 훼손한 경우

제49조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에 속해 있는 입출국 곡물의 송하인,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 검사 신청 담당자가 출입국 곡물의 실제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고 해관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검사를 회피한 경우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0조 검역증명서, 인장, 표식, 봉인표지, 화물 통관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 혹은 절취하거나 위조·변조된 검역증명서, 인장, 표식, 봉인표지를 사용하였으나 형사 처벌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와 동일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해관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을 초래한 경우
- (2) 동식물 검역증명서, 인장, 표식, 봉인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제52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생산, 가공, 보관 사업장의 출입국 곡물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되면 본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송, 폐기 혹은 무해화 처리를 하는 것 외에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관이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등록 허가를 취소한다.

제53조 해관이 채취한 시료 혹은 해관 검사에서 합격한 출입국 곡물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조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품가치 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해관의 적재적합 검사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사용하여 출국 곡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항공기,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여 출국 곡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역법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3,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입국 곡물에 중대한 안전, 품질 문제가 있거나 인체 건강 또는 농림·축산·수산업 생산 생태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 (2) 입국 곡물의 회수 혹은 처리 상황을 해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 입국 곡물이 해관이 지정한 검사장소에 하역되지 않은 경우
- (4) 입국 곡물에서 본 방법 제17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견되었으나 유효한 검역처리를 거부하고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56조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출입국 곡물을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하지 않거나 지정장소에서 생산, 가공, 보관하지 않은 경우
- (2) 동식물 검역증명서, 인장, 표식, 봉인표지를 매매, 절취하거나 위

- 조·변조된 동식물 검역증명서, 인장, 표식, 봉인표지를 사용한 경우
(3) 위조·변조된 수출국 또는 지역의 공식 검역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4) 해관의 검역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7조 해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고의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검험검역 결과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검험검역 또는 증명서 발급을 지연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58조 가공용이 아닌 직접 판매용 출입경 곡물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국경 호시(互市)무역¹⁾ 방식에 따른 소량 출입국 곡물은 해관총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0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61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1년 12월 발표한 <출입국 곡물 및 사료 검사검역 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 제7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이전 출입국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규정과 본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1) '호시(互市)무역'이란 중국 접경 지역의 특정 구역 주민들에게 허용된 관세 없는 국경무역을 뜻하는 말이다.